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09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안철수 · 김예지 · 조경태
엄태영 · 임종득 · 김재섭
김승수 · 윤한홍 · 김용태
김형동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 신설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의2 본문 중 “제12조”를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2조”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9(이공계인력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의10(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의11(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u>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u> 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 ----- ----- ----- ----- ----- ----- ----- <u>제25조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0항까지 및 제6항</u> -----.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u>제12조</u> ,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 ----- ----- ----- <u>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2조</u> ----- ----- -----.

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
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7조의9(이공계인력 지원에 관
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견기업은 「국가과학기
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의10(비산배출시설의 정기
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38조의2제12항에 따른 중소기
업으로 본다.

제17조의11(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특례) 매
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다.